

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·제출 의무

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·회피 신청

- 신고 의무자 | 공직자
- 신고의무발생 |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
- 신고 방법 |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
- 위반 시 제재 |
 -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-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

※ "이해충돌방지담당관"이란 「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」 제2조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및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북도교육청 등의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.

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

2022. 5. 19. 시행



이해충돌이란?

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

적용대상 → 모든 공직자

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, 국·공립학교 교직원, 공무수행사인*

*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

직무관련자

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인가, 허가, 면허, 등록, 특허, 인종 등	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단속, 조사, 감독, 부담금·과태료 부과 등
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사계약, 용역계약,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	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산하기관, 피평가기관,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

사적이해관계자

-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(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*)
 - *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-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·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·단체
-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·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·법인·단체
- 공직자로 채용·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·단체 또는 대리하거나 고문·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·법인·단체
-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%, 출자지분 총수의 30%,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한 법인·단체
-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하고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장·국장·과장으로서 직무담당 공직자를 지휘·감독했던 퇴직공직자
- 공직자를 지휘·감독하는 상급자
- 최근 2년 이내 1회 100만 원,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의 상대방

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·제출 의무

2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

■ 제 출 의 무 자 | 고위공직자

※ 「공직자윤리법」상 재산등록의무자 중 '재산공개 대상자(교육감만 해당)

■ 제 출 의 무 발 생 | 임용(임기 개시)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

■ 제 출 방 법 | 임용(임기 개시)일부 30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* 제출

* 재직했던 법인·단체와 업무내용, 대리·고문·자문 내용, 관리·운영했던 사업·영리행위 내용 등

■ 위 반 시 제 재 |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

■ 신 고 의 무 자 | 공직자

■ 신 고 의 무 발 생 |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*, 특수관계사업자**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(금전거래, 부동산거래, 물품·용역·공사 등 계약)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

*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
**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, 출자지분 총수의 30% 이상,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

■ 신 고 방 법 | 안 날부터 14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

■ 위 반 시 제 재 |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4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

■ 신 고 의 무 자 | 공직자

■ 신 고 의 무 발 생 | 소속 공공기관의 퇴직자(최근 2년 이내)인 직무관련자와 골프, 여행, 사행성오락을 하는 경우

■ 신 고 방 법 | 사적접촉 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※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적 접촉 후 14일 이내 신고

■ 위 반 시 제 재 |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

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·금지 행위

1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

■ 제 한 대 상 자 | 공직자

■ 제 한 행 위 |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, 조언·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②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

※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

③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·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

④ 외국의 기관·법인·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

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

※ ②④⑤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

■ 위 반 시 제 재 |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2 가족 채용 제한

■ 제 한 대 상 | 공공기관(산하기관, 자회사 포함)

■ 제 한 행 위 | 다음의 가족*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•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•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

*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
■ 위 반 시 제 재 | (고위공직자,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·유도·묵인한 경우)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

3 수의계약 체결 제한

■ 제 한 대 상 | 공공기관(산하기관, 자회사 포함)

■ 제 한 행 위 | 다음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

• 소속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

•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

•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

•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·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

• 이상의 공직자의 가족*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·단체,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**

*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
**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, 출자지분 30% 이상,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

■ 위 반 시 제 재 | (고위공직자, 계약업무 담당자 등이 자신이나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·유도·묵인한 경우)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·수익 금지

■ 금 지 대 상 | 공직자

■ 금 지 행 위 |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·차량·선박·항공기·건물·토지·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는 행위

■ 위 반 시 제 재 | •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•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

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

